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12호
- 나. 제 안 자 : 김형재 의원(찬성자 25명)
- 다. 발의일자 : 2025년 2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2월 5일

2. 제안이유

- 오늘날 전통사찰들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및 힐링명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역시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여 전통사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신설(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전통사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와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 관내의 전통사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발의되었음.

(2) 개정의 필요성

-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존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전통사찰은 60개¹⁾이며,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²⁾와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³⁾를 지원받고 있음.

1) 2025년 1월 기준

2) 전통사찰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 보수 지원

3) 전통사찰의 화재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지원

따라서 현재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와 관계된 지원사업은 노후화 보수와 재난을 대비하는 방재시설 위주로만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이 평상시에 이용하는 일반적인 안전시설의 설치는 계단, 이동로 등을 구비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특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최근 5년(2020-2024년) 간의 서울시 소재 전통사찰의 안전 위해요소 점검 횟수는 총 52회에 불과하므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안된 전통사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해 보임.

< 2020-2024년도 자치구별 전통사찰 소재 및 안전 위해요소 점검 현황 >

자치구 명	소재 개수	점검 횟수	자치구 명	소재 개수	점검 횟수	자치구 명	소재 개수	점검 횟수
강 남 구	2	2	도 봉 구	3	2	양 천 구	0	-
강 동 구	0	-	동대문구	2	0	영등포구	0	-
강 북 구	7	0	동 작 구	3	0	용 산 구	0	-
강 서 구	3	12	마 포 구	0	-	은 평 구	5	12
관 악 구	4	1	서대문구	2	0	종 로 구	12	0
광 진 구	1	2	서 초 구	1	0	중 구	0	-
구 로 구	0	-	성 동 구	1	0	중 랑 구	0	-
금 천 구	1	15	성 북 구	9	0	합 계	60	52
노 원 구	4	6	송 파 구	0	-			

(3) 안전사고 예방 지원(안 제7조제4호 및 제5호)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 조사와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의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⁴⁾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⁵⁾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벌칙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치사무의 범위가므로 규정 신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서울시 소재 전통사찰에 난간, 미끄럼방지 시설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면 전통사찰을 방문하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가적으로 보행 편의 증진에 따른 방문 횟수 증가도 기대되는 바임.

< 개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u> 5. <u>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u>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사·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5)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의안번호
2412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형재 의원	2025. 2.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제정 필요성〉 ○ 서울시 소재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안전 도모 〈주요 입법 요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				
추진경과	○ '25. 2. 3.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조례 상의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규정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으로 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대응방안	○ 별도 의견 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향 후 계 획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팀장	강은주(☎2133-2520)	담당	권태환(☎2133-2523)